



정보통신안테나

입법예고

- 전기통신공사법중 개정법률(안)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

공포

- 무선설비형식 검정 및 기술기준 확인증명규칙중 개정령
- 전자과장애검정규칙중 개정령
- 우편법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

◎체신부공고 제1994-153호

전기통신공사법중 개정법률(안) (공고일 94.9.26)

개정취지

급속한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통신환경변화에 맞추어 소규모 단순공사를 시공하는 별종공사법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전기통신공사업의 허가기준 완화와 공사업 개시신고 폐지 등 공사업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전기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별종공사업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등록제로 완화하여 신규진입을 용이하게 함.
- 나. 전기통신공사업의 허가기준중 공사용기기에 관한 사항 및 공사업 개시신고의무를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함.
- 다. 통신공사는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리발주가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괄발주를 인정함.
- 라. 최근 2년간 공사실적이 저조한 경우 공사업의 영업정지처분 등을 할 수 있으나 별종공사법에 대해서는 이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소규모업자를 보호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공고일 94.9.16)

제정이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공포('94.8.3. 관보게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민자유치자본계획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수립함.
-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민자유 치사업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을 15인이내로 구성 함.
 - 위원은 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상공자원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체신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환경처장관과 위 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
- 주무관청이 수립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중 위원회 심의대상 범위
 - 총사업비규모가 1천억원이상인 사업
 - 주무관청이 20상이거나 20상의 시·도에 걸 쳐 시행되는 사업
 - 기타 주무관청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부의하
-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업계획의 범위

- 는 사업
 - 총사업비 규모가 2천억원이상인 사업
 - 부대사업 사업비 규모가 1천억원이상인 사업
 - 기타 주무관청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업
- 사업시행자가 토지매수업무 등을 주무관청 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시 위탁수수료등 등 위탁조건을 관계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결정 토록 함.
- 부대사업은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탄력적 으로 운영하되 택지개발사업만 시행요건을 제한
 - 택지개발사업비가 제1종시설 총사업비 규모이 내일 것
 - 제1종시설사업의 공정이 10%이상 진행된 후 대 상택지를 분양
- 민자유치로 건설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소유권 귀 속의 기준
 - 제1종시설중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제1종시설의 “보조기능을 수행 하는 시설”로 한정하고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 본계획 작성시 미리 반영토록 함.
 - 제2종시설중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시설 을 “공적업무수행 등 공공성유지에 불가피하다 고 인정되는 시설”로 제한하고 주무관청이 시설 사업기본계획 작성시 미리 반영토록 함.
- 제1종시설 총사업비 범위
 - 총사업비의 산정항목을 규정하여 제1종시설 사 업계획수립의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 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이윤 10%)
- 제1종시설의 등록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등 록령을 준용토록 함.
- 제1종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주무관청이 시설의 유지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

리운영권을 가진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시설의 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무상사용내용 변경의 경우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함으로써 공익의 현저한 증가를 가져온다고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하고, 무상사용내용 변경에 따른 보상을 내용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회수 차질분, 필요경비 및 손실로 정함.

— 사용료신고시 신고서를 사용료징수 개시 15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 첨부서류를 정함.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및 보증료 기준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3개 관리기관(산은, 신보, 기술신보)의 업무기준을 통일토록 함.

— 개별사업시행자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를 50억원 이내로 제한함.

—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1천분의 100이내로 제한함.

○민관합동법인에 대한 공공부문의 출자 및 의결권 제한의 예외를 규정함.

— 제2종시설을 건설하는 민관합동법인에 공공부문이 50%이상 출자할 수 있는 경우를 국공유재산의 활용이 필요한 사업 또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함.

○제2종시설을 건설하는 민관합동법에 출자한 공공부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법인의 해산, 청산, 파산의 경우,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정관에서 정한 사업목적 변경할 경우로 함.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 및 장기대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법인의 해산, 청산, 파산의 방지

및 사용료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교육부공고 제1994-28호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

(공고일 94.9.3)

개정취지

직업기술교육의 확충 및 충실화를 통하여 국제화·개방화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인문중심의 교육체제를 개편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 등의 산업교육기관 설치·운영 등 산업교육 진흥의 의무를 강화하고, 민간협의체인 산업교육 협의회를 구성하여 산업협동을 활성화하고자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학생진로지도를 강화하여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도 중학교 졸업생수의 2분의 1이상의 학생수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산업기관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다. 산업기술발전과 산업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교육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교육기관 학생의 현장실습 대상 산업체 선정을 중앙 및 지방 산공회의소에 설치되는 민간협의체인 산업교육협의회가 1차적으로 담당하도록 함.

마. 산업교원과 산업체의 장이 산업기술의 개량 또

는 개발을 위하여 산업자문을 하거나 연구기기를 상호활용할 수 있도록 함.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교육협의회는 기술의 혁신 등에 의한 신기기를 산업교육기관에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사. 산업교육과 산업현장을 연계하고 산업교육을 위한 산업계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상공회의소에 산업교육협의회를 둠.

아. 산업교육협회의회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교육행정기관, 산업교육기관, 산업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함.

자. 산업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산업현장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차. 국가 등은 외국의 정부, 국제기구, 산업체 등과 산업교육진흥을 위한 국제협력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공포

◎체신부령 제877호

무선설비형식검정 및 기술기준 확인증명규칙중 개정령

(공포일 : 94.9.13)

개정이유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를 형식검정 대상기기에서 제외하여 아마추어무선의 활성화를 기하는 한편, 형식검정신청서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그 처

리기한을 단축하는 등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를 형식검정대상기기에서 제외하여 아마추어무선 인구의 저변확대와 아마추어무선국 시설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제2조제1항).

나. 종전에는 형식검정신청을 하는 경우 취급설명서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취급설명서만을 제출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제3조제2항 및 제3항).

다. 형식검정 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을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 및 자가사용 목적기기인 경우에는 20일에서 10일로, 레이더 등은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여 관련산업체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제8조).

라. 기술기준확인증명을 하는 경우 출장증명을 할 수 있는 기준을 현재 100대이상에서 50대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제25조제2항).

◎체신부령 제878호

전자파장해검정규칙중 개정령

(공포일 : 94.9.13)

개정이유

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전자파장해검정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현재 체신부장관이 지정·감독하는 전자파장해검정 시험기관을 전파연구소장이 지정·감독하도록 하고, 전자파장해검정 시험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을 때에는 이를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제13 및 제14조).
- 나. 전자파장해검정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장해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의견진술 절차를 명확히 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제31조).

◎체신부령 제879호

우편법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일 : 94.9.13)

개정이유

우편물의 내용과 형태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현행 우편물 종별체계를 우편물의 송달속도에 의한 종별체제로 개편하고 기타 비현실적인 우편이용조건을 현실화하여 우편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새로 도입되는 우편물 종별체계를 우편물의 송달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접수한 날의 다음 날에 배달하는 빠른 우편물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배달하는 보통우편물로 구분함(제12조)
- 나. 체신부장관은 도서·신간오지 등 교통이 불편하여 우편물송달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지역에 배달되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그 송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 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일간신문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가 우체국과 체결한 정기발송 계약에 따라 발송하는 때에는 보통우편물로 접수한 경우에도 빠른우편물에 준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1항).
- 라. 배달하는데 시간제 여유가 있는 보통 우편물은 요금감액 조건으로 송달기준일수에 일정한 일수를 더한 날까지 송달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2항).
- 마. 체신부장관은 우편물송달기준의 이행목표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함(제15조).
- 바. 우편물의 종류에 따라 부가하여 취급할 수 있는 특수취급의 종류를 정함(제25조). ◆

정보통신산업을 선도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